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6. 20 선고 2022가단542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석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드보라

변 론 종 결 2023. 5. 2.

판 결 선 고 2023. 6. 2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0. 1.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55,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0. 1.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134,114,6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4,114,69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12. 피고의 배우자였던 C에게 여수시 D 토지 및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하였다. C는 이 사건 건물에서 윤활유를 거래처에 공급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2019. 11. 29.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되었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전소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20가단70899), 이 법원은 2021. 10. 20. ‘C는 원고에게 134,114,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2021.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는 2020. 1. 14.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1/2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하고, 2020. 1.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피고와 C는 2019. 12. 17.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20. 3. 25.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134,114,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C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분 증여가 C와 피고 사이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의 성격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아니한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가 2019. 12. 17.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 C가 2020.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증여한 사실, 피고와 C가 2020. 3. 25.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C는 2019. 11. 19. '피고와 C 공동소유로 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소유로 하고, 순천시 E아파트 F호와 안동시 G 부동산은 C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점, ② C는

2019. 12. 19. 울산 울주군 H, I호로 주민등록을 옮겨 피고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점, ③ 달리 피고와 C가 가장이혼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C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의 채무초과 여부

C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 및 가액이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5, 6, 9, 10호증, 을 제4,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재산	가액	인정근거
1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	200,000,000	다툼 없음
2	순천시 E아파트 F호	68,000,000	을 제4호증
3	안동시 G 토지	170,340,000	다툼 없음
합계		438,340,000	

<소극재산>

순번	내역	원고 주장 금액	가액(원)	인정근거
1	이 사건 아파트 근저당 채무(J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44,200,000	144,200,000	다툼 없음
2	K에 대한 채무	37,534,000	0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20. 1. 14. 당시 채무액을 특정하기 어려움
3	순천세무서	5,000,000	0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20. 1. 14. 당시 채무액을 특정하기 어려움
4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146,050,000	0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20. 1. 14. 당시 채무액을 특정하기 어려움
5	전남신용보증재 단에 대한 채무	12,750,000	0	2022. 9. 30.자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따르면, 2020. 3. 25. 기준 채권액이 0원이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20. 1. 14. 당시 채무액을 특정하기 어려움
6	L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02,169,318	102,169,318	2022. 10. 25.자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따른 2020.

				1. 14.까지 발생한 대여금 채무 원금을 합산하면, 140,529,251원이나, 원고의 주장대로 인정함
7	M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7,605,000	0	2022. 9. 30.자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따르면, 2020. 3. 25. 기준 채무액이 0원임
8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110,000,000	100,000,000	2022. 10. 21.자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따르면, 2020. 3. 25. 기준 채무액이 100,000,000원임.
9	N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26,851,000	0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20. 1. 14. 당시 채무액을 특정하기 어려움
10	O은행에 대한 채무	100,000,000	100,000,000	2022. 9. 30.자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따르면, 2020. 3. 25. 기준 대출잔액이 106,000,000원이나, 원고 주장대로 인정함
합계			446,369,318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위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재산분할의 상당성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이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즉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도 이혼신고일인 2020. 3. 25.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편, 피고는 별거일인 2019. 7. 1.을 재산분할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C가 2019. 7. 1. 별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2019. 7. 1.부터 C와 피고가 별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별거 직후부터 곧바로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빠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와 피고의 부부생활관계가 2019. 7. 1. 무렵 사실상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별지2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고,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재산에 대한 판단 근거는 별지3 불인정재산명세표의 ‘불인정 이유’란 기재와 같다. 아래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부분 중 위 각 표에 반하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C의 대출금 채무(별지2 표 중 C의 소극재산 순번 1 내지 4)는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피고와의 혼인기간 동안 위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계를 위한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대출금 채무가 부부공동생활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고가 2020. 3. 16. L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카드로 대출금 채무(원금 2,300만원)와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원금 11,000원)은 C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어 이혼신고를 하기 직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분할대상 소극재산에서 제외한다).

(다) 재산분할의 방법 및 상당한 재산분할 금액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의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 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재산분할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 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순재산은 255,800,000원이고, C의 순재산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302,483,791원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는 -46,683,791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은 혼인의 과정 및 기간, C와 피고의 혼인기간 중 수입 및 생활비 등의 기여 정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관한 C와 피고의 기여 정도, C와 피고의 나이, 재산상태, 경제적 활동 능력 및 장래의 전망, 분할대상인 채무의 발생 경위 및 금액, 피고가 미성년자녀들을 양육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C와 피고의 각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것으로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로 C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C가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1)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해당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참조). 그러나 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C와 피고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8. 10. 2. 주식회사 J 명의로 채권최고액 184,000,000원, 채무자 C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21. 2. 1.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 나아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의 가액은 2억 원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J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44,200,000원이므로, C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55,800,000원(2억 원 - 144,200,000원)인데,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으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55,8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55,8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선종

별지1

부동산 목록

[집합건물]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순천시 동

(도로명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29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295.5227㎡, 2층 441.8056㎡, 3층 441.8056㎡, 4층 441.8056㎡,
 5층 441.8056㎡, 6층 441.8056㎡, 7층 441.8056㎡, 8층 441.8056㎡,
 9층 441.8056㎡, 10층 441.8056㎡, 11층 441.8056㎡, 12층 441.8056㎡,
 13층 441.8056㎡, 14층 441.8056㎡, 15층 441.8056㎡, 16층 441.8056㎡,
 17층 441.8056㎡, 18층 441.8056㎡, 19층 350,0251㎡, 20층 350,0251㎡,
 21층 350,0251㎡, 22층 350,0251㎡, 23층 350,0251㎡, 24층 350,0251㎡,
 25층 350,0251㎡, 26층 350,0251㎡, 27층 220,9028㎡, 28층 220,9028㎡,
 29층 220,902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라남도 순천시 대 45404.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84.9922㎡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 대지 45404.4분의 42.7774

별지2

분할재산명세표

소유자	순 번	재산의 표시	가액(원)	인정근거
피고	적극 재산	1 이 사건 아파트	400,000,000	일치 진술
		소계	400,000,000	
	소극 재산	1 J주택구입자금대출	144,200,000	일치 진술
		소계	144,200,000	
	피고의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		255,800,000	
C	적극 재산	1 안동시 G 토지	170,340,000	일치 진술
		소계	170,340,000	
	소극 재산	1 중소기업은행	100,000,000	2022. 10. 21.자 금융거래정보회신
		2 O은행	106,000,000	2022. 9. 30.자 금융거래정보회신
		3 L 주식회사	140,529,251	2022. 10. 25.자 금융거래정보회신
		4 L 주식회사P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된 2018. 3. 9.자 대출금 채권)	100,000,000	2023. 1. 13.자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5 주식회사 Q	26,294,540	2022. 8. 9.자 문서송부서상 배당표
		소계	472,823,791	2022. 8. 9.자 문서송부서상 배당표
	C의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		-302,483,791	

	피고·C의 순재산 합계	-46,683,791	

별지3

불인정재산명세표

소유자		재산의 표시	주장 가액	불인정 이유
C	적극 재산	순천시 E아파트 F호	93,960,000	C가 협의이혼신고일 이전에 위 상가를 매도 하였음.
	소극 재산	순천세무서	6,180,250	2020. 3. 25. 당시 위 채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안동시	51,570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	476,760	

